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00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30,567,000원, 농어촌 특별세 3,056,69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15,669,570원, 농어촌 특별세 1,325,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유한회사 C의 주식취득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0. 3. 26.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를 5,000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주주현황 및 주식의 변동사항

	2010.3.26. (설립당시)		2011.8.25. (주식매매 당시)			2012.6.26. (주식매매 당시)			2012.9.25. (주식매매 당시)		
주주명의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증감수	주식수	지분율	증감수	주식수	지분율
D	2,500	50%	-2,500	0	0	1,300	1,300	26%	-1,300	0	0%
A	2,500	50%	2,500	5,000	100%	-2,800	2,200	44%	0	2,200	44%
B	0	0	0	0	0	1,500	1,500	30%	1,300	2,800	56%
합계	5,000	100%	0	5,000	100%	0	5,000	100%	0	5,000	100%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안전행정부에서 2013. 6. 10.부터 2013. 7. 26.까지 실시한 2013년도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통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8. 25.경 D로부터 2,5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간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0. 원고 A에게 2011. 8. 2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과세물건들의 가액 1,080,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67,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3,056,690원 합계 33,623,69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감찰을 통하여 원고 B이 2012. 6. 26. 원고 A으로부터 1,500주, 2012. 9. 25. D로부터 1,300주 합계 2,8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6%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간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0. 원고 B에게 2012. 9. 2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과세물건들의 가액 1,080,030,000원에 지분비율(56%)을 곱하여 산출한 604,816,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69,570원, 농어촌 특별세 1,325,020원 합계 16,994,590원을 부과(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3. 10. 29, 원고 B은 2013. 10. 28.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7.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실질적으로 D이 설립한 1인 소유 회사로, 원고들은 D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과점주주 인정에 관한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 A은 D의 친구인 E의 조카로서 현재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D과 3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과거에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2011년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2~3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G'라는 상호로 척추 교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2) D은 광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I 소유의 J 어린이집과 그 부지인 광주 북구 K 대 801.2㎡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인수하기 위하여 2011. 4. 4. I와 위 어린이집의 인가권, 비품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1. 5.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어린이집과 토지를 1,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0,030,000원에 낙찰 받았으며, 낙찰보증금으로 107,940,000원을 납입한 후 같은 날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우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및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9억여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는 당초 D로 되어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 9. 6.부터 2012. 7. 4.까지 원고 A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12. 7. 4. 다시 D로 변경되었는데, 증인 D은 이 법원에서 J 어린이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은 사업의 실패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원고 A을 대표이사로 세운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5661호 I에 대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 A 역시 D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D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 A은 위 조사과정에서 D이 2011. 2. 21. I로부터 J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하여 만나는 자리에서 D과 동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 A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D에게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I가 2011년 여름경 J 어린이집이 경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I에게 어린이집 교제비, 우유값, 장사료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문이 날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인 피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지분양도명세서 및 서광주세무서의 주식거래자료 회신 공문 등에 의하여 원고 A이 2011. 8. 25.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인 5,000주를 취득하고 원고 B이 2012. 9. 25.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6%인 2,8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2) 그에 반하여 증인 D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원고들과 D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및 그 해지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A이 2011. 9. 6.부터 2012. 7.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D이 I로부터 J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자리에 원고 A이 동석한 점, ④ I가 원고 A에게 J 어린이집이 경락되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A이 I에게 이를 지급한 점, ⑤ D과 원고들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또한 증인 D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증언하였으나, D이 원고 A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1. 5. 4. 우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9억여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믿기 어렵다.

4) 원고 A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척추 교정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박성남

판사 신유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8

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끝.